

7천여 치과 의사 절규 전국 회원 '의료법 개악' 한목소리

3월 21일 오후 2시 20분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결계 총궐기대회'는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올라온 7천여명의 치과 의사와 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 7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고 재개정을 촉구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복지부의 입법예고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치협을 비롯해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궐기대회는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의료인들이 대규모로 집결한 것으로 앞으로의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투쟁이었다.

이날 저녁 KBS, MBC, SBS 방송은 메인 뉴스에서 이번 의료인들의 궐기대회 소식을 일제히 특집으로 다루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궐기대회는 전국에서 7천여명의 치과 의사들과 임직원 등이 '치과 의사협회'라는 글자가 새겨진 '노란색 모자'를 쓰고 질서정연하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전국 치과 의사들의 단합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비가 오는 악조건 속에 2시간 10분에 걸쳐 진행된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성토했는 의료계 단체 인사들의 연설과 대정부 요구안 채택, 투쟁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의료인들의 의료법 개악에 대한 주장과 투쟁의지를 보여줬다. 또한 국민건강 장례식과 유시민 장관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판에 물풍선 던지기, 희망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대회 행사장 분위기를 돋구었다.

이날 4개 단체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질서의 대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의료법개악 저지를 위해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리기관 휴폐업 등 강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모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의료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8만여 치과계 가족들은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와 끝까지 함께 하며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를 대표해 읽은 연대사에서 부총재 제주지부 회장은 "지금의 개악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료인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철폐되어야 한다. 의료법 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욱 구로구치과 의사회 직전회장이 의료계를 대표해 읽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4개 의료인단체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서리도 줄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의료인들이 지나친 상업화에 물들지 않고 소신껏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 줄 것과 ▲개정안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모함을 꾸짖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치과 의사 전문의 첫 시험 내년 1월 10일 수련고시위 회의

2008년도에 처음으로 치러질 치과 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이 2008년도 1월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또 1차 시험의 문항수는 120문항, 시험시간은 휴식 없이 14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안창영)는 3월 27일 치협 회원에서 회의를 열고 제1회 치과 의사 전문의 시험 1차 시험의 시행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험일시, 출제문제수, 시험시간, 휴식시간, 시험출제기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 시험일시는 내년 1월 10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140분간 120문항을 출제하기로 했다. 시험은 휴식시간 없이 1교시와 2교시를 연이어

140분간 진행하기로 했으며, 시험 중 퇴실할 수 없도록 정했다.

또 시험장소는 덕수정보고등학교 또는 자양중학교 중 택일하기로 했으며, 응시료는 잠정적으로 36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간 그린파크호텔에서 시험 출제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시험문제 선정위원회와 관련 보철과목은 6명, 보존과목은 4명, 다른 과목은 3명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점은 시험 실시 다음날인 1월 11일 각 과목당 1명의 채점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치협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차기 회의에서는 2차 시험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대국민 서명용지 탄원서 전달 가두캠페인 등 투쟁방향 논의 / 치협 비대위

치협 의료법 전면개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3월 26일 치협회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과천궐기대회 평가 및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투쟁 수위 등을 논의했다.

치협 비대위는 이와 함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 등 복지부의 보복성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번 과천 궐기대회의 고조된 분위기를 이어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후 진행될 정부의 입법절차에 의료계 단체와 공조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의 최종개정안이 곧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의협, 한의협 등과 철저히 공조하면서 의료법 개정 반대 대국민 서명용지와 탄원서 등을 규제개혁

위원회에 전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치과병·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더욱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장협의회가 적극 나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성금을 모으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지부에서는 4개 단체와 공조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 하면서 26개구 동시다발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구강보건팀 해체 등 보복성 행정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논의했다.

치협은 치과계 단체별 성명서 발표, 변재진 차관면담, 복지부 출입기자 회견, 유시민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국민구강보건을 내팽개치는 구강보건팀 해체의 부당성을 알리고 설득하기로 했다.

유인·알선 금지 등 삭제 요구 치협,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1차 의견서를 3월 17일자로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는 복지부의 입법예고기한 마지막 날인 25일에 맞춰 치협의 공식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한 것으로 그동안 치협이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온 내용들이다.

치협은 특히, 제91조(유인·알선 등 금지) 조항에서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직접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기관에 환자몰아주기, 특정의료기관 비대화, 과잉진료 유발, 미끼상품 개발을 통한 유인, 의료기관 양극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치협은 가격할인을 통한 유인·알선 행위 인정시 국민의료비 상승, 허위·과대광고 증가,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환자 전가, 끼워 팔기, 미끼 상품 개발 등 의료질서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항삭제를 주장했다.

진료비용 등의 고지 조항과 관련, 치협은 진료비용 등에 대해 게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환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의견서에서 치협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전속 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미취과 등 진

료지원과에 한정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신중한 검토 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전면적인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99조 임상진료지침 조항에 대해 치협의 입장은 의료는 규격화할 사항이 아니며 필요시 의료인단체 자율적으로 제정할 사안으로 규격진료, 방어진료가 우려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치협은 또 제110조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보조업무만 의료법에 명시하고 진료보조업무는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며 진료보조업무를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기관 명칭조항에 있어서도 임프란트 등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진료방법 등의 급증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무분별한 명칭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의료기관 명칭사용에 있어 전문과목의 삽입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단서조항 유예기간을 향후 10년간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3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가운데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